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18
----------	------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1일 최웅식 의원 외 29명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최웅식 의원)

1. 제안이유
 -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늘고 있지만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내문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반려동물 주인이 펫티켓(펫+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다른 이용객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실정이어서 반려동물 주인의 연령 제한과 동반할 수 있는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연락처 등의 사전안내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혼란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해당 개정안은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이용인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반려동물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준수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장비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제안배경

- 서울시 반려동물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공개한 서울시 자치구별 동물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43만 8,606마리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이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서 2020년 10월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8.4%에 달하는 192명이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바 있음.¹⁾

- 동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불편 사례로 각각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 놀랐다’는 점과 ‘개를 무서워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는 것을 꼽는 것으로 나타남.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

-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4(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1)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몰 안전관리 강화 필요”

현행	개정안
	<p><u>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u></p>

- 본 조례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사전적인 의미를 차용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등 개별 법률에서는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²⁾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정의)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현재 개별 법률에서도 사전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정의하고 있지만, 사전적 정의가 가지는 개방성에 따른 법 적용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각 법률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게 정의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법상 다중이용시설로 한다는 문구를 통해 법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³⁾
-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 차용한 “다중이용시설” 정의 역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별도의 정의가 없어⁴⁾ 일부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만큼 사업 추진 시 지원의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단, 이에 따르면 현재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 대규모점포 등의 경우 인·허가권 등 실질적인 규제와 감독이 자치구청장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주체에 자치구청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황의관·박희주 (2019).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II -다중이용시설-』. 한국소비자원.

4) 동물보호법 제13조의 3(맹견의 출입금지 등) 4호에서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가 규정되어 있으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정의는 없음.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반려동물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가구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와 가이드라인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감독 주체가 구청장인 점을 고려해 구청장이 관리의 주체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지원 및 가이드라인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함

2. 수정안 주요 내용

- 지원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함(안 제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618
----------	-------------

제안년월일 : 2021년 9월 8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지원 및 가이드라인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지원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함(안 제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항의 “시장”을 “시장과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시장과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7조의4(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시장과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u></p> <p><u>③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u></p>